

의안 번호	1875	<b>〔지방자치법〕 전부개정 시행 반영을 위한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21. 12. 6.(월)
- 나.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2. 6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14.(화)

#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되어 2022. 1. 13. 시행됨에 따라,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1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 :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총 11건

- 가.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- 다.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- 라.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개정
- 마.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」의 개정
- 바.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- 사. 「울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
- 아.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- 자.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」의 개정
- 차.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」의 개정
- 카. 「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」의 개정

#### **4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**

#### **5. 검토의견**

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